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2020. 11. 26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31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(금)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(화)

2. 제안이유

포스트 코로나 대응과 관련하여 비대면 민원행정 활성화 관련으로 청사 편익시설 대관 비대면(온라인) 신청 시 이용 요금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추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편익시설 종류 : 대회의실 삭제
- 나. 편익시설 운영시간 : 대회의실 삭제
- 다. 편익시설 대관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 : 신청서 양식 추가
- 라. 편익시설 사용료 : 대회의실 삭제

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, 청사 편익시설 대관 비대면 온라인 신청 시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편익시설 대관 신청 양식을 조례에 추가 정비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 회의실 변동 사항을 적용하고자 2020. 11. 13. 금천구청장이 제출하였음.

나. 주요내용

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음.

표1 개정안 주요내용

-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 추가
 - 안 별지 제1호서식
- 대회의실란 삭제
 - 안 별표 1, 별표 2, 별표 3
- 부자연스러운 용어 및 문장 정비 : 44건

현 행

[별표3]

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사용료(제9조제2항관련)

| 시설명 | 단위 | 사용료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|
| 광장 | - | 무 료 | ○ 전력 사용시 시간당 10,000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 |
| 썬큰광장 | 1회 | 8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 사용 초과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 |
| 대회의실 | 1회 | 4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 |
| 기획상황실 | 1회 | 4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 |
| 대 강 당 | 1회 | 10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 |
| 구내식당 | 1회 | 9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원 별도가산 |
| 체력단련실 | 월 | 20,000원 | 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·공휴일은 휴무 ○ 경로우대자(만65세 이상)는 30% 할인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을 중첩시 높은 할인을 적용 |
| 세미나실 | 1회 | 2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 |
| 대회의실 (의회) | 1회 | 3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 |
| 제1소회의실 (의회) | 1회 | 2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 |
| 제2소회의실 (의회) | 1회 | 2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 |

※ 공통사항

① 사용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
개 정 안

[별표 3]

편익시설 사용료(제9조제3항 관련)

| 시설명 | 단위 | 사용료 | 비 고 |
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|---|
| 광장 | - | 무 료 | ○ 전력 사용 시 시간당 10,000원을 부과함 ○ 주민휴식공간은 사용면적에서 제외함 |
| 썬큰광장 | 1회 | 8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0,000원 가산함 |
| 기획상황실 | 1회 | 4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,000원 가산함 |
| 대 강 당 | 1회 | 10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50,000원 가산함 |
| 구내식당 | 1회 | 9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45,000원 가산함 ○ 1회당 부가사용료 100,000원 별도 가산 |
| 체력단련실 | 월 | 20,000원 | ○ 3개월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사용료 징수 ○ 토·일·공휴일은 휴무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(65세 이상)은 30% 할인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% 할인 ※ 할인을 적용 사유가 겹칠 시 더 높은 할인을 적용 |
| 세미나실 | 1회 | 2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 |
| 대회의실 (의회) | 1회 | 3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5,000원 가산함 |
| 제1소회의실 (의회) | 1회 | 2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 |
| 제2소회의실 (의회) | 1회 | 20,000원 | ○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임 ○ 기준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,000원 가산함 |

※ 공통사항

①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
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 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
 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 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 -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함
(냉난방시 30% 추가가산)
 - ⑦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의 각각 부대시설 사용료는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 1회 사용시간은 사용승인 받은 편익 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한다.
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)
- ※ 별도사항
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

<신 설>

- ② 편익시설 사용자의 주차장 이용요금은 별도 징수함
 - ③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시간으로 봄
 - ④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봄
 - ⑤ 시설물의 설치, 철거 등 사용 준비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
 - ⑥ 평일 18시 이후 및 토·일·공휴일은 기준사용요금의 30%를 가산함
(냉난방 시 30% 추가 가산)
 - ⑦ 음향, 조명, 피아노, 빔 프로젝트와 같은 부대 시설 사용료는 각각 1회당 10,000원으로 하며, 1회 사용시간 사용승인 받은 편익 시설의 총 사용시간으로 함(장비의 설치·운영과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하여야 함)
- ※ 별도사항
구의회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은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함

[별지 제1호서식]

편익시설 사용 신청서(제6조제1항 관련)

| 편익시설 사용 신청서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|
| 성 명 (회 사 명) | | | |
| 주 소 | | | |
| 생년월일 (사업자 등록번호) | | 전화번호 및 FAX | |
| 이 동 전 화 | | E - M a i l | |
| 대 표 자 명 (단 체 신 청 시) | | 담 당 자 명 (단 체 신 청 시) | |
| 행사 내용 | 행 사 명 | | 참 여 인원 |
| | 행 사 주요내용 | | |
| 사용 설 | 장 소 (V 표 표기)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강당 <input type="checkbox"/> 썬큰광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구청광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획상황실 <input type="checkbox"/> 세미나실 <input type="checkbox"/> 구내식당 | |
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회의실(의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소회의실(의회)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소회의실(의회) | |

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-----|--|--|
| 사용 일시 | 사용일자 | 년 월 일 | | |
| | 사용일시 | 시 분 ~ 시 분 까지 | | |
| | 대강당 대관 시 | 준비 대관 |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 까지 | |
| | 대관 시 | 철수 대관 | 년 월 일 시 분 ~ 시 분 까지 | |
| 현 수 막 설 치 유 무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설치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설치 | 마이크 | 개 | |
| 냉 · 난 방 사 용 여 부 | <input type="checkbox"/> 냉방 <input type="checkbox"/> 난방 | 빔프로 젝트 |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사용 | |
| <p>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편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자 (서명 또는 인)</p> | | | | |
| <p>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이 편익시설 사용신청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이 구청장 및 구의회의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청 자 (서명 또는 인)</p> | | | | 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 금 천 구 청 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귀 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input type="checkbox"/> 금 천 구 의 회 의 장 <input type="checkbox"/> 귀 하</p> | | | | |

다. 검토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고, 조직개편에 따른 회의실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 추가
 -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민원행정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 편익시설 대관 신청서 양식을 조례에 추가하여 법령을 정비하고, 편익시설 사용자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 실시
- 대회의실란 삭제
 - 2018. 1. 1. 조직개편에 따른 9층 대회의실 장소에 미래발전추진단 부서 신설 변동사항 반영
- 기타 부자연스러운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음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,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첨부 : 관련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
가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- 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
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 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 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 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 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 - 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